

<p>과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.</p> <p><u>2000年度 第1回 消防防災本部 所管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</u></p> <p>□ 먼저, 추경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고, 이어서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0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,626억 7천 4백만원의 5.4%인 142억 6천만원이 증액된 2,769억 3천 4백만원입니다. ○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총 15건 중 증액 12건, 감액 3건으로서 민방위관리비는 기정 예산 대비 0.6%인 2억 1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, 소방관리비는 6.3% 증액된 144억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 □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○ 첫째, 서울시 종로구 예장동 4-5번지(남산별관)에 서울종합방재센터 건립을 위하여 '98.11~2001.7까지 약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,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59억 5천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. ○ 이와 같이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계획변경으로 활용토록 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적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 ○ 둘째, 119구급장비 중의 하나인 자동심실제 세동기를 당초 30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30대가 추가되어야만 구급차 1대에 필요한 기준량이 완료된다 하여 3억 6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. ○ 이는 구급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구명률을 높이고 특히 심정지 환자들에게 응급처치 확대 등으로 구급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 ○ 셋째,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소재하는 서부소방서 건물의 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던 결과 재난위험 판정(D급)을 받아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여 재난관리기금 중 8천만원을 기정 예산에 반영하였고, 	<p>나머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.</p> <p>이는 전면 개·보수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p>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, 또한 소방방재본부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들로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안으로서 그만큼 예산편성이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,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측과 통찰력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, 의회에서 의결 승인한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.</p> <p><u>'99會計年度 一般會計 非常企劃官 所管 歲入·歲出決算 및豫備費支出 承認案 檢討報告書</u></p> <p>□ 먼저,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9회계년도 세입결산은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국고보조금이 없어 세입액은 없습니다. ○ 이는 매년 실시하는 인력동원 실제훈련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왔으나, '99년도에는 서울지역이 충무훈련지역으로 전액 국고부담으로 실시한 탓입니다. ○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 5,800만원 중 예산집행액 3억 9,283만원이며, 예산현액 대비 14.2%인 6,51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. □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. ○ '99회계년도 불용액은 6,51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.2%이며, 이는 전년도 불용액 2천 4백만원보다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. <p>불용발생 원인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</p>
--	---

22 (第18回-行政自治第2次)

64만 원(1%)이고, 예산절감이 1,377만 원(15.9%), 예산집행잔액이 5,415만 원(83.1%)입니다.

이와 같은 불용액을 억지로 집행하여 낭비하는 예산보다 예산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,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.